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

□ 변경 사항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변경

④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

⑤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: 2023. 3. 3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<u>이</u>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<u>고</u> 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<u>이</u> 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 <u>이</u> 50 억원 미만인 경우 <u>소규모펀드</u> 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	<u>2022. 3. 31. 기준</u>	<u>2022. 12. 30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10. 29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 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 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 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 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 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 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 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 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 행령 개정사항 반 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 행령 개정사항 반 영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(4)영업일에 지급	15 시 30 분 이전(경과 후) :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(4)영업일에 지급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 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 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 득세 별도	세액 공제 : (2023. 1. 1.부터)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 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%(중 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이하 또 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 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 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 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 도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 4. 30. 기준</u>	<u>2023. 1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 내역 삭제	<u>주식 부책임용인력 유진형 (2018.03.23~2018.05.20)</u> <u>주식 부책임용인력 김내혁 (2018.05.21~2020.01.08)</u> <u>채권 책임운용인력 문성호 (2014.09.25~2020.01.08)</u> <u>채권 부책임용인력 진재식 (2017.09.25~2020.01.08)</u>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혼합] 3) 자산유동화증권 :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다) (생략)	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혼합] 3) 자산유동화증권 : <u><삭 제>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)~10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다) (현행과 같음)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혼합] 2) 동일종목투자 :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 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(나) (생략)	-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혼합] 2) 동일종목투자 : 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 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	〈신 설〉	<u>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 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(생략)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생략)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(현행과 같음) 설정한 후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 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현행과 같음)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시 30분[오후 3시 30분]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시 30분[오후 3시 30분] 이전(경과 후) : 2(3)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시 30분[오후 3시 30분]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시 30분[오후 3시 30분] 이전(경과 후) : 2(3)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(4)영업일 에 환매금액 지급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	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

		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4.30~2022.04.29]	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38,532,727원입니다.</u>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4.30~2022.04.29] 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파생상품·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</u>
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	<u>2022. 3. 31. 기준</u>	<u>2022. 12. 30. 기준</u>
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	〈신 설〉	주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직전 회계연도(2021.04.30~2022.04.29)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없습니다.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u>아래 첨부 참조</u>	<u>아래 첨부 참조</u>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10. 29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10. 29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2. 10. 29. 기준</u>

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 재	2022. 4. 30. 기준	2023. 1. 31. 기준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 재	2022. 4. 30. 기준	2023. 1. 31. 기준
3. 집합투자재산 관 리회사에 관한 사항 (신탁업자)	자본시장법 및 시 행령 개정사항 반 영	(1) 주요업무 (생략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 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 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업무 (현행과 같음) 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 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 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 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 행령 개정사항 반 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및 시 행령 개정사항 반 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 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 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 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 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 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 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
		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생 략)	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 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생 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~ ⑦ (생 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
		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략)	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 (법 시행령 제 81조제 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
--	--	--	---

※ 별 첨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
공제제도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
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
	※지방소득세 별도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
해지가산세	없음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